이 보도자료는 2023. 4. 25.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희경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 도 자 료

2023. 4. 25.(화)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여, 오늘 테라폼랩스 **창업자 A○○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前 ▽▽ 대표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한 결과,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즉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음

- 테라 프로젝트에 의하면 테라 코인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가격고정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였음

- 테라폼랩스 측은 2018. 9.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하였음에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하였고, 이후 **디파이 서비스**까지 추진하며 테라 블록체인 **경제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하였음

❑ 테라폼랩스 일당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조작, 허위홍보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음

- 이들은 2018. 8.부터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자신**하며 국내외 **유력 투자사나 저명인사** 등으로부터 **약 550억 원**을 투자받고, 2019. 4. 테라 블록체인 출시 이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조작**하여 **테라 블록체인 발행 코인**을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시켰음

- 이후, 2020. 12. 및 2021. 3. 미러·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사기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켰고, 테라 **블록체인 이용 및 코인 발행 수익**이 반영되는 **루나 코인 가격**이 최고 약 120달러까지 치솟았음(시가총액 약 400억 달러)

- 이러한 사기 행각은 **거래조작 및 투기수요 창출**을 통한 테라 코인 **가격고정**으로 계속될 수 있었는데, 2022. 5.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조작으로 가격고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고 **수요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지고 회복되지 못하였음

- 결국, 테라 가격고정이 깨진지 불과 며칠만에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하여 전세계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테라폼랩스 일당은 그 이전에 **최소 약 4,629억 원** 이익을 챙겼음

❑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러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로비**, 일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

- 특히, A○○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시리즈 투자**' **약 1,221억 원**을 받아내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한 **또다른 중대 금융사기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합동수사단은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 **약 2,468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음

- 이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

Ⅰ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피고인	역할 · 지위	피고인	역할 · 지위
A○○	테라 프로젝트 총괄 (테라폼랩스 창업자)	F○○	테라 프로젝트 기술책임 (테라 법인 임직원)
B○○	테라 프로젝트 경영기획 (테라폼랩스 창립멤버)	G○○	테라 프로젝트 시스템 관리 (테라 법인 임직원)
C○○	테라 프로젝트 사업기획 (테라폼랩스 창립멤버)	H○○	테라 프로젝트 시스템 개발 (테라 법인 임직원)
D○○	테라 프로젝트 제품기획 (테라폼랩스 창립멤버)	I○○	前 ▽▽ 대표이사
E○○	테라 프로젝트 기술개발 (테라 법인 임직원)	J○○	◇◇◇◇ 부사장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A○○ B○○ C○○ D○○ E○○ F○○ G○○ H○○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 **특경법위반(사기)**	'18. 7.~'22. 5.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테라 프로젝트'**)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 판매·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약 4,629억 원 부당이익 취득 및 약 3,769억 원 상습 편취**
	자본시장법위반(공모규제 위반)	'19. 4.~'20. 5.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 코인을 주조(Minting),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하여 증권의 **모집·매출**행위 영위
	자본시장법위반(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20. 12.~'22. 5. **증권신고서 제출 및 금융위 인가 없이** '미러 프로토콜'을 통해 미국 주식가치를 추종하는 **파생결합증권** 가상자산(mAsset)의 **모집매출 행위 및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
	유사수신법위반	'21. 3.~'22. 5. **앵커 프로토콜에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9.56%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약 515억 개 상당의 테라 코인을 예치받아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9. 3.~'22. 6.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1억 7천만 건을 무단 유출**함

A○○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 특경법위반(사기)**	'20. 2.~'21. 12. 차이페이 사업(**'차이 프로젝트'**)이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 이용을 통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절감**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투자' 유치하여 투자사들로부터 **약 1,221억 원 부당이득 취득 및 동액 상습 편취**
	특경법위반 (배임, 횡령)	'19. 6.~'19. 12. 테라폼랩스 보유 **141억 원 상당 테라 코인(KRT)에 대한 자전거래**를 통해 현금화한 후, △△△△△△△에 **무상 지원**함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위반	'21. 5.~'22. 2.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없이 **'KRT 탑업'** 서비스 출시하여 **테라 코인 매매**를 **중개·알선**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20. 12. ▽▽ 대표인 I○○에게 ▽▽ **MOU 체결, 테라페이 연동 지원 청탁** 등 대가로 루나 코인 50만 개 교부
I○○	**배임수재**	'20. 12. ▽▽ 대표이사로서 A○○으로부터 테라페이 연동 지원 등 **부정한 청탁** 받고 대가로 **루나 코인 50만 개(약 38억 원 수익) 수수**
J○○	**특경법위반 (알선수재)**	'18. 12. A○○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의 **은행 펌뱅킹 승인 청탁 등 알선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 개(약 1.6억 원 수익) 수수**

Ⅱ 주요 수사경과

- '22. 5. 19. 고소장 접수
- '22. 9. 13. K○○ 등 해외도피자 6인 체포영장 발부
- '22. 11.~ A○○ 등 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재산 추징보전
- '23. 3. 23. K○○, L○○ 체포(몬테네그로 인터폴)
- '23. 3. 24. 몬테네그로에 K○○, L○○ 범죄인인도청구
- '23. 3. 30. A○○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 '23. 4. 25. A○○ 등 10명 불구속 기소

Ⅲ 수사 결과

1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범죄

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

-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 테라 가격고정 알고리즘의 허구성** 때문에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음

  -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로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사업이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고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임

나. 테라 프로젝트 추진 강행

- A○○, K○○은 법적 규제로 테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금융당국, 투자자들을 기만**하며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하였음

  - A○○, K○○은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을 설립**한 다음, '금융당국'을 상대로 **테라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업인 것처럼 일반 간편결제사업을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지만,

  - '투자자'들 상대로 간편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어 수익을 창출한다고 **허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소위 **'이중플레이'**를 하였음

- 한편 A○○ 등 테라 프로젝트 초기 멤버 7인은 **루나 코인 1억 3천만 개 상당을 미리 배정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허위 홍보를 통해 **루나 코인 상장에도 성공**함

다. 테라 블록체인 간편결제사업 허위홍보 및 거래조작

- **[간편결제사업 허위 홍보 및 거래조작]** 전통적인 일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차이페이 결제정보(약 1억 7천만 건)를 지속적으로 무단 유출**하여 이를 **테라 블록체인에 복제**한 것임에도, 테라 블록체인 기술이 차이페이에 사용되어 수수료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였음

- **[테라 수요 및 가격고정 조작]**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거래가 거의 없어 테라 코인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트레이딩 봇'을 이용 ①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려 수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특정 가격을 설정하여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반복하여 테라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작**함

- **[차이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사기]** A○○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표방한 **'차이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하며 위와 같은 **허위 홍보 및 거래 조작**을 통해 투자사들로부터 **'시리즈 투자' 방식**으로 차이 전환우선주 투자금 1,221억 원을 편취하였음

  - 본건 피해금 상당 부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중앙회 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회적 약자인 산재 피해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적자금이 결국 피고인들의 금융사기 먹잇감**이 되었음

라. 미러 프로토콜 허위홍보 및 거래조작

- 테라폼랩스 일당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판매되는 **가상자산(mAsset)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에도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mAsset)이 미국 주식(Asset)의 가격을 추종한다고 허위 홍보**하였음

  - 가상자산(mAsset) 가격이 미국 주식(Asset) 가격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을 **기술적으로 실현하지 못했음**

● **[미러봇을 통한 가상자산 가격 조작]** 가상자산 가격이 알고리즘에 따라 미국주식 가격에 자동 추종되는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전체 물량의 80%를 보유하며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 조작**

마. 앵커 프로토콜 허위홍보 및 거래조작

● **'돌려막기' 방식**으로 앵커 프로토콜 테라 예치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연 19.56%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재원은 **대출이자 수익**과 담보로 제공받은 루나 코인 등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보상 수익**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였음

- 테라 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 대출 수요도 부족하고, 스테이킹 보상 수익도 미미한 상태에서 예치 이자를 훨씬 하회하는 대출이자 수익 등으로 **연 19.56%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음

- 결국 앵커 프로토콜은 신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는 **'폰지 사기' 구조**였음

● **[앵커봇을 통한 대출수요 조작]** 위와 같은 **폰지사기 구조를 은폐**하기 위하여, **앵커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테라 코인(UST)에 대한 자전 대출**을 반복하며 대출 수요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였음

2 테라·루나 코인 폭락 및 피고인들 이익 실현

가. 테라·루나 코인 가격 변동 및 폭락

● **[앵커 프로토콜 출시 前]** 트레이딩 봇 프로그램을 사용,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 거래(볼륨 메이킹) 및 특정 가격 주문(마켓 메이킹)을 반복**하여 **테라 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이 되는 것처럼 **가장**함

● **[앵커 프로토콜 출시 後]** '21. 3.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하여 각종 허위홍보, 거래조작으로 투기적 수요를 창출하여 **'21. 5.경 약 2조 원에 불과했던 테라 코인 유통량이 약 1년 만인 2022. 5.경 약 21조 원으로 급증**하였음

【 루나 코인 시세 및 UST 발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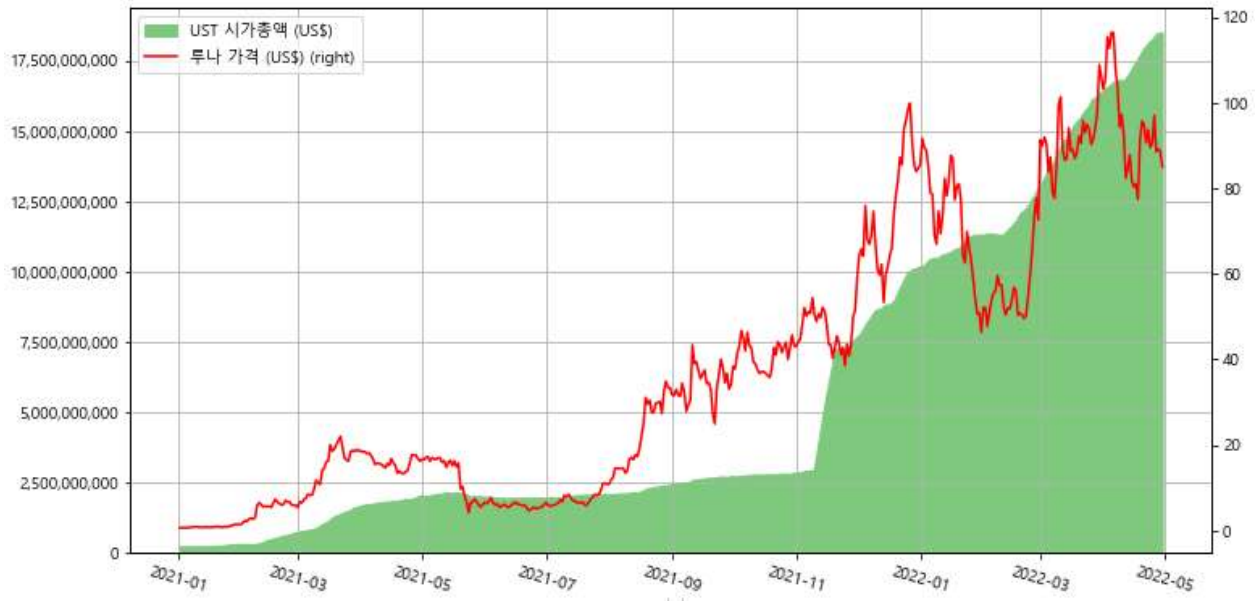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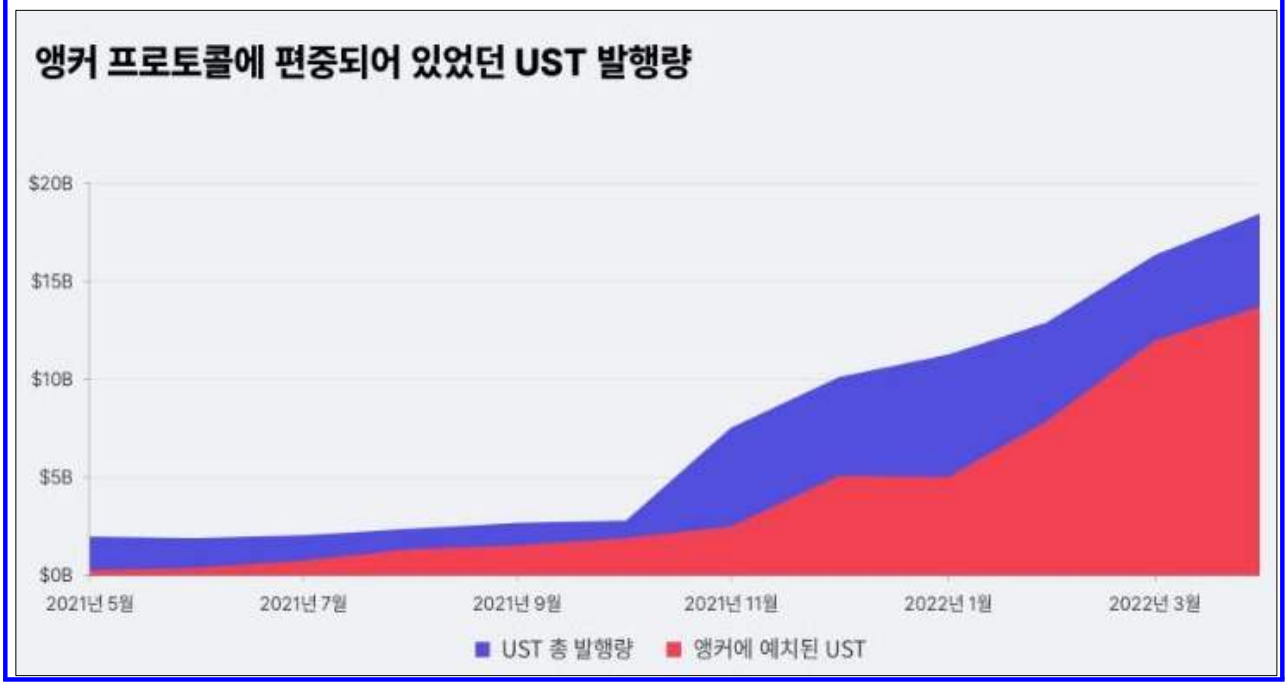

- 테라폼랩스 일당은 거래조작 및 투기수요 창출을 통해 테라 코인 가격 고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2. 5.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조작으로 가격고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테라·루나 버블이 붕괴됨

- 테라폼랩스 일당은 '21. 5.경 테라 디페깅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 트레이딩 업체를 통한 **대량의 인위적인 테라 코인(UST) 매입**으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 **테라 코인 유통량이 10배 급증**한 ’22. 5. 디페깅 발생 때는 인위적인 테라 코인 **매입을 통한 페깅 회복이 불가능**했고, **투기적 수요 창출도 한계**에 부딪혀 결국 페깅 회복을 못하고 **테라·루나 코인 동반 폭락(버블붕괴)**으로 이어짐

나. 테라폼랩스 일당 막대한 이익 실현

- ’22. 5. 버블 붕괴로 **루나 코인 시가 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하여 투자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반면 테라폼랩스 일당은 **폭락 이전** 보유 코인 처분으로 **최소 4,629억 원 상당 이익**을 실현하였음 (루나 코인 최고가 시점 기준 미실현이익 **최소 20조 원**)

  - A○○은 **루나 코인 가격이 상승한 앵커프로토콜 출시 시점(’21. 3.)부터 본격적으로 루나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루나 코인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하였음

【A○○의 월별 루나 코인 판매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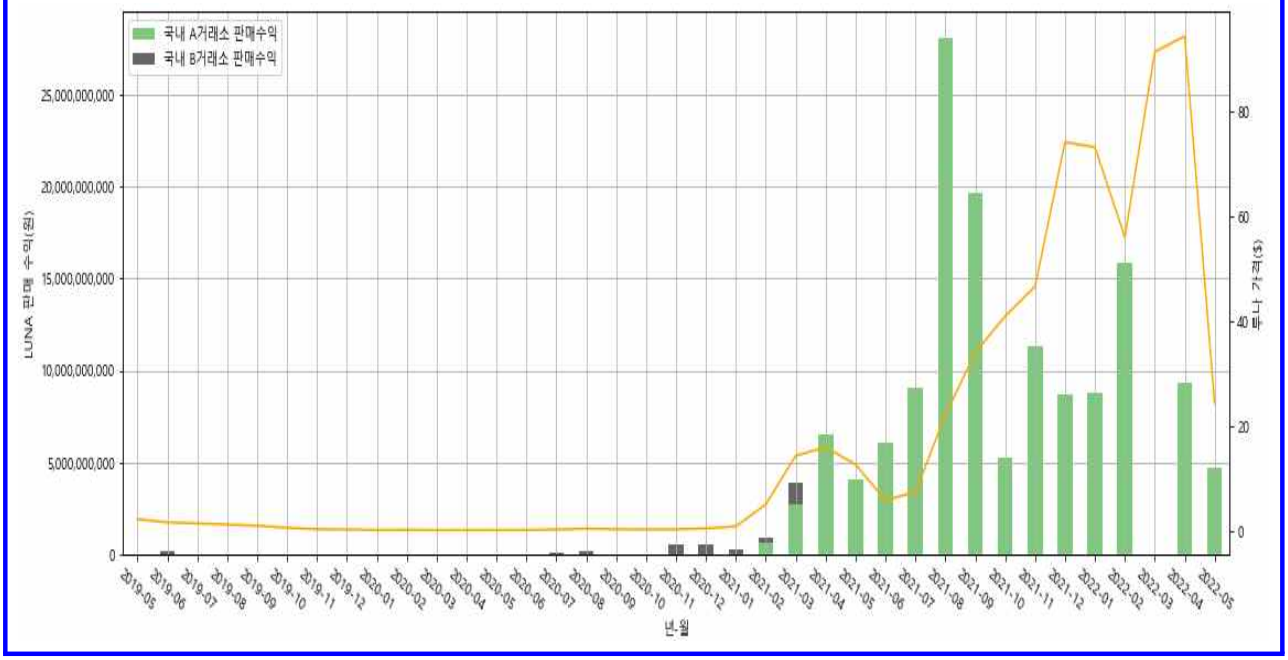

- 이들 뿐만 아니라, **A○○ 주변에서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도왔던 유명인사, 투자업체 등**도 헐값에 배정받은 루나 코인으로 **수 억 원 내지 2,000억 원대 이익**을 **취득**하였음

● 한편, A○○ 측으로부터 **테라 프로젝트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무상 교부받은 이커머스 업체 대표 등**도 큰 수익을 실현하였음

- I○○은 ▽▽을 테라 결제사업 홍보에 이용하도록 하고, ▽▽ 핵심 인력을 테라에 지원하는 등 ▽▽의 이익과 무관하게 **A○○의 테라 프로젝트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루나 코인을 지급받아 **3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하고,

- J○○는 은행 로비를 통해 펌뱀킹 연동을 성사시켜 **A○○의 결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루나 코인을 지급받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함

3 테라-루나 사건 범죄수익 추적 및 피해자 지원

가.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재산 동결 조치

● A○○, K○○ 등 10명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하여 **2,46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함

● 테라폼랩스 일당 보유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루나파운데이션가드 보유 비트코인 및 그 유래재산이 흘러들어간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예금 계좌**를 찾아 동결 요청하는 등 이들의 **범죄수익이 유입된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에도 동결조치를 요청하였음

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 관련

● 테라폼랩스 일당의 **사기적부정거래 범죄를 규명·기소**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민사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일당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9조)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자본시장법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7.>

● 아울러 피고인들의 **부패재산을 최대한 추적하고 추징**하여, 향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4 해외 도피 공범 추적 진행 상황

가. 신속한 인터폴 적색수배 및 적극적 사법공조

● 해외도피 주요 공범들에 대한 **신속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

- 신속히 범죄혐의를 입증하여, '22. 9. 13. K○○, L○○ 등 **해외도피 공범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등 조치를 취하였음
- 이러한 조치로, 해외도피 공범 **2명은 자진 귀국**하여 현재 수사 중이고, 핵심 공범인 **K○○, L○○은 '23. 3. 23.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체포**됨

● K○○, L○○ 검거를 위한 **사법공조** 진행

- 이들의 세르비아 체류 사실이 확인된 후, 신속히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협의하여 세르비아 사법당국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고, **'23. 1. 긴급인도구속 청구**하였음(세르비아 법원 체포, 압수수색영장 발부)
- 합수단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23. 2. 1. 직접 세르비아 사법당국을 방문**해 K○○ 등의 검거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이후, K○○은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위조하여 세르비아를 떠나 인접국가인 몬테네그로로 잠입**하고, 그곳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던 중 검거됨

나. K○○ 송환 노력

● '23. 3. 23. K○○, L○○이 체포된 다음날인 **'23. 3. 24. 몬테네그로에 범죄인인도청구**하였음

●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가담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들의 보다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K○○의 국내 송환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5 루나 코인의 증권성

가. 금융투자상품 해당

- 테라폼랩스 일당은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루나 코인 발행·판매'(ICO, Initial Coin Offering)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 조달**
-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 측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금융)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원본손실 위험 부담)**하고 **사업수익을 귀속받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임

>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투자계약증권 요건 충족

- 공동사업인 **테라 프로젝트의 손익 귀속**
  - 테라 프로젝트는 **'테라 코인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 사업**으로,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 및 테라 코인 발행 '주조차익'** 수익을 사업성과로 추구
  - 사업성과가 **루나 코인에 분배되어 그 가치에 반영**되므로, 루나 코인은 테라 프로젝트의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임

【 루나 코인의 사업수익 귀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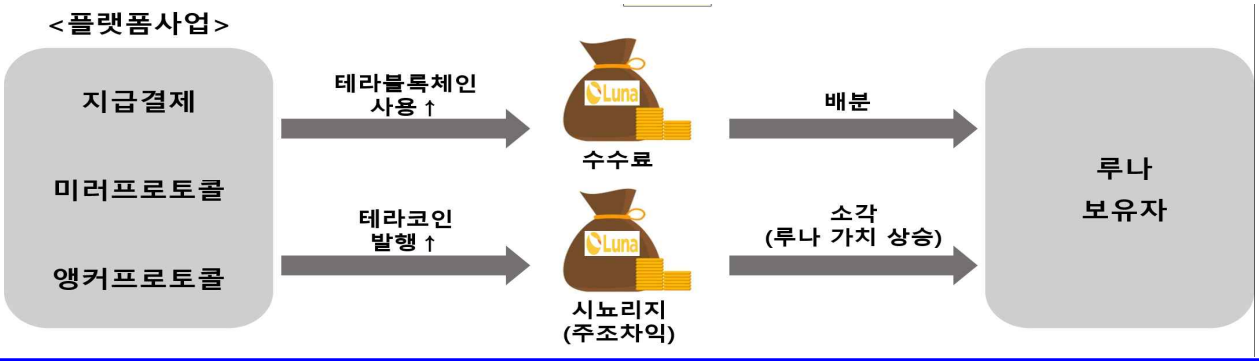

- 테라폼랩스 일당도 스스로 지급결제 사업 등으로 **테라 블록체인 수요가 증가하면 루나 코인의 가격(가치)가 증가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를 유인하였음

【2022. 4. 26. 티타임즈 테라 홍보 영상】

- 루나 코인에 분배되는 블록체인 사용 **수수료 '수익'**은 **검증인 수수료**와 **무관**함

【 루나 코인 스테이킹 보상 및 검증인 수수료 배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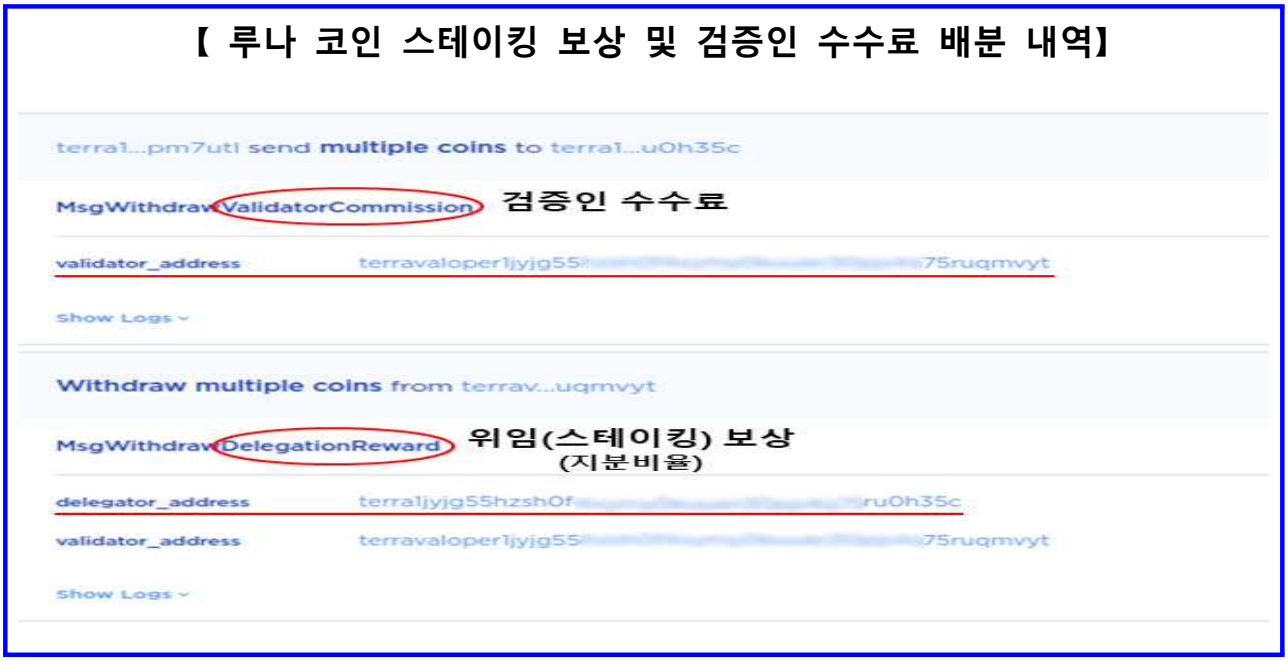

● **투자계약증권 요건 해당**

- 루나 코인 투자자는 **'테라 프로젝트'라는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테라폼랩스 일당)**이 수행한 **공동사업(테라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의 결과(수수료 및 주조차익)**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그 권리가 표시된 것이 루나 코인임)

> 제4조(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받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 표명

【2017. 9. 29.자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 **(ICO 금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① 지난 9.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

② 그러나,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 가상화폐 규제 법률이 없어 증권 의율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 우리 정부는 물론 전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화폐(가상자산)는 당연히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임

- 다만, **증권이 아닌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진행

●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증권 의율이 어렵다는 주장은 테라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명문 규정과 정부의 규제 방침을 왜곡한 것임

【2023. 2. 6.자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1 토큰 증권 규율체계와 개념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 입니다.

○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 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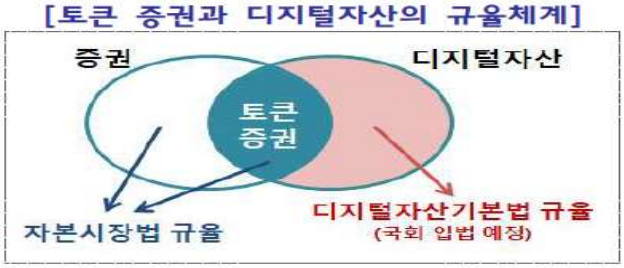

○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